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553 |
|----------|------|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2월 2일 황유정 의원외 17명
-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2월 2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황유정 의원)

1. 제안이유

- 성평등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 재원과 용도를 확대하고자 함.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 대상에 기업을 포함하여 기금의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40조)
- 기금 재정 규모 확대를 위해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품을 기금 재원에 추가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현행 ‘성평등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가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기금의 명칭, 재원, 용도 변경 (안 제5장, 안 제39조 및 제40조)

- 성평등 기금은 1996년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이래 20년 이상 현행 운용 방식을 유지해 오면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변화된 환경과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장 <u>성평등 기금</u> | 제5장 <u>성평등 가족 기금</u> |
| 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u>촉진하기</u>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제39조(기금의 설치) ① ----- ----- <u>실현하기</u> ----- ----- -----.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 ----- -----.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 |
|---|--|
| <p><신 설> <신 설></p> <p>3. (생 략)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 <u>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u></p> <p>2. 제30조에 따른 <u>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u></p> <p>3. <u>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u></p> <p>4. (생 략) ② (생 략)</p> | <p>3. <u>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u></p> <p>4. <u>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0조(기금의 용도) ① ----- -----.</p> <p>1. <u>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u></p> <p>2. ----- <u>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u> -----</p> <p><삭 제></p> <p>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행조례 제5조¹⁾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양성평등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의 시행계획을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각 목으로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바목의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과 나목의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기금명에 가족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성평등 구현에 있어 1차 집단인 가족 내에서의 실천이 날로 중요해지며, 이에 따라 가족생활 관련 사업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임.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조례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 | |
|---------------------------------|--------------------------------|
|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u>나.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u> |
|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 라. 성평등 문화 확산 |
|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
| <u>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u> | |
|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

- 안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하던 것을 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의 목적을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표현은 서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양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 새로 추가하려는 두 가지 재원은 현금과 물품을 포함한 민간의 재원을 의미하며, 그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기금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개정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의 재원은 '23년말 기준 23억원 규모의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현황>

○ '23년말 적립금(누적) : 2,233,625,673원

(단위: 원)

| 구 분 | 이용액 (年국내이용액) | 적립금(0.3%) [A] | 후불교통 할인금액 [B] | 지원금사용액 [C] | 최종 적립금액 [A]-[B]-[C] |
|-----|-------------------|------------------|------------------|---------------|------------------------|
| 누적 | 5,470,260,028,358 | 14,507,221,529 | 7,901,278,097 | 4,372,317,759 | 2,233,625,673 |
| '23 | 640,084,650,799 | 1,256,704,406 | 657,625,224 | 526,740,218 | 72,338,964 |

○ 연도별 적립금

(단위: 백만원)

| 합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2,234 | 1,026 | 53 | -66 | 149 | 196 | 305 | 52 | 96 | -109 | 304 | 155 | 72 |

○ 개정안 제40조제1항은 기금의 용도로 '성평등 가족 기금'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도록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제1호)으로 바꾸고,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제2항)에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 문화 실현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일반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삭제하였는데 관련해서 기금 사업으로 시설 설치나 운영을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그 필요성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관련(안 제30조)

○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변경하고 그 재원, 활용 범위 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30조 역시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민간과의 상생을 통한 성평등 및 가족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까지 포함시켰음.

- 민간 기업이 성평등이나 가족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돌봄 지원 및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p>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u>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u>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u>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u>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u>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p>제30조(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 ----- ----- <u>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u> ----- ----- -- <u>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u> ----- ----- ----- --- <u>성평등 가족 기금</u>----- ----- ----- -----.</p> |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안 제21조의10)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³⁾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여성가족정책실장⁴⁾으로 하던 것을 부위원장과 동일하게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 | 행 | 제 | 안 | 안 |
|---|---|------------------------------|---|---|
|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 |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출생 및 보육, 아이돌봄, 아동, 가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1인가구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 | |
|--|--|
| <p>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u>,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④ ~ ⑧ (생략)</p> | <p>② (생략)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과</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

- 일반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와 같은 당연직, 시장이 임명(지명) 또는 위촉, 호선의 방법 등으로 선출할 수 있음⁵⁾
 - 당연직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위원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 직위를 부여받는 자가 바로 위원이 되게 되는 점에 특징이 있음⁶⁾.
 - 이에 반해 호선(互選)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어떤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라는 뜻⁷⁾으로 이 경우 피선

5)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2018.09.),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p.19.
6) 임송학(2009.01.01.), ‘자문위원회규정에 포함돼야 할 내용 등’, 법률입안상식.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479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거권자와 선거권자의 범위가 같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주어지게 됨. 즉 조문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은 위원이 위원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위원들이 투표하거나 위원들에게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됨.

- 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일반·특별회계 예산과 비교하여 기금은 비교적 집행의 자율성이 인정되는바, 현행 조례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인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기금의 심의 과정 전반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심의·의결 기구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지방기금법」제5조제1항은⁸⁾ 기금 관리·운용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더욱이 「국가재정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 의견⁹⁾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위원장을 모든 위원 중 호선하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22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¹⁰⁾ 중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는 위원회는 8개로 약 1/3가량에 해당함(붙임 참조).

-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을 규정함에 있어 개정안 같이 호선으로 선출할 경우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제41조제1항에서 개정안에 따른 변경된 기금명을 기금운용심의회 명칭에 반영하지 않은 바, 조문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 행 | 수정 제안안 |
|--|---|
|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회</u> (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u> (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2005.4.), 「국가재정법안(정부제출)」, 「국가건전재정법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등 5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22-123쪽.

10) 기금 내에서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개별 위원회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성평등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호선을 통해 선출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 시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변경된 기금명을 기금운용심의회에 명칭에도 반영하고, 기금관리주체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호선하는 것에서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기금운용심의회에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규정함(안 제41조제1항).
- 기금운용심의회에 위원장을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553 |
|----------|------------|

제안년월일 : 2024년 2월 2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변경된 기금명을 기금운용심의회에 명칭에도 반영하고, 기금관리 주체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에서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기금 운용심의회에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규정함(안 제41조제1항).
- 기금운용심의회에 위원장을 현행대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장 <u>성평등 기금</u></p> | <p>제30조(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 -- ----- ----- <u>성평등을</u> <u>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u> ----- ----- ----- <u>비영리</u> <u>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u> ----- ----- ----- ----- <u>성평등</u> <u>가족 기금</u>----- ----- ----- -----.</p> <p>제5장 <u>성평등 가족</u> <u>기금</u></p> | <p>제30조(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 -- ----- ----- <u>성평등을</u> <u>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u> ----- ----- ----- <u>비영리</u> <u>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u> ----- ----- ----- ----- <u>성평등</u> <u>가족 기금</u>----- ----- ----- -----.</p> <p>제5장 <u>성평등 가족</u> <u>기금</u></p> |
| <p>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u>촉</u></p> | <p>제39조(기금의 설치) ① ----- <u>실</u></p> | <p>제39조(기금의 설치) ① ----- <u>실</u></p>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u>진하기</u>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3. (생략)</p> <p>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p>1. <u>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u></p> | <p><u>현하기</u> ----- ----- -----.</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u></p> <p>4. <u>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0조(기금의 용도) ① ----- ----- -----.</p> <p>1. <u>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u></p> | <p><u>현하기</u> ----- ----- -----.</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u></p> <p>4. <u>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0조(기금의 용도) ① ----- ----- -----.</p> <p>1. <u>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u></p>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u>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 사업</u></p> <p>2. 제30조에 따른 <u>법 인 또는 단체가 수 행하는 사업</u></p> <p>3. <u>여성관련시설의 설 치 및 운영</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41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회</u>(이하 "기금운용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여성가 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u></p> | <p>2. ----- <u>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u> - -----</p> <p><삭제></p> <p>3. (현행 제4호와 같 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현행과 같 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장과</u> ----- ----- -----</p> | <p>2. ----- <u>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u> - -----</p> <p><삭제></p> <p>3. (현행 제4호와 같 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 의 회</u>(이하 "기금운용심 의회"라 한다)를 둔 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에서 호선하며,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④ ~ ⑧ (생략)</p> | <p>----- ----- ----- -----.</p> <p>1. ~ 3. (현행과 같 음)</p> <p>④ ~ ⑧ (현행과 같 음)</p> | <p>1. ~ 3. (현행과 같 음)</p> <p>④ ~ ⑧ (현행과 같 음)</p>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를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로,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로, “성평등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촉진하기”를 “실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 또는

단체가”를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가족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u>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u>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u>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u>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u>성평등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성평등 기금</u></p> <p>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u>성평등을 촉진하기</u>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 <p>제30조(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 ----- ----- <u>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u> ----- ----- -- <u>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의</u> ----- ----- --- <u>성평등 가족 기금</u>-----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u>성평등 가족 기금</u></p> <p>제39조(기금의 설치) ① ----- ----- <u>실현하기</u> ----- ----- -----.</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u></p> <p>4. <u>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u></p> |

3. (생략)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생략)

② (생략)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 ② ~ ⑧ (생략)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
-----.

1.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2. -----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 -----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가족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